

고 소 장

고 소 인 1.

2. 최

3. 통일경제포럼

대표자 최

고소인들의 대리인 별지 목록

피고소인

1. 이 前 국가정보원장

2. 한 前 국가정보원장 직무대행

3. 이 前 국가정보원장

4. 서 現 국가정보원장

5. 이 前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6. 신 前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7. 이 現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8. 국가정보원 경기지부장

9. 최

10. 홍

11. 김

12. 유

13. 박

14. 이

15. 성명불상 국가정보원 직원

위 피고소인 1 내지 15의 직장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고 소 취 지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등손실), 성매매특별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당사자 관계

피고소인1 내지 3은 전 국가정보원장이고, 피고소인4는 현직 국가정보원장으로 국가정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피고소인5 내지 7은 전·현직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고, 피고소인8은 국가정보원 경기지부장이며, 피고소인 9 내지 15는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소속 직원들로 이 사건 정보원에 대한 담당 수사관 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자들입니다. 피고소인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특정 대학 출신 인사 수십 명 등 민간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불법적인 사찰을 하였습니다.

고소인1은 직장인, 고소인2는 강사로 재직 중인 자들로, 각 통일경제포럼의 를 맡고 있습니다. 고소인3은 통일경제의 필요성을 알리고 함께 연구하는 진보적인 학술단체로, 1,5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증 제1호증 고유번호증).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에 의하여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의 대상이 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및 인격권 등 권리 행사의 침해를 받은 자들입니다.

2. 적용법조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顛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직권 남용의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직권남용죄) ①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소인들의 고소외 에 대한 접근 및 포섭

고소외 (이하 ‘이 사건 제보자’라고 합니다)는 2006년
학교에서 하다 군대에 입대한 자로, 군에 입대하자 국
군 기무사령부에서 ‘학생운동하던 장병들은 자진 신고하라’는 권유를 하여,

단순히 '자신이 학생회 활동을 하였던 점'을 기무사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이후 국정원은 국군 기무사와 함께 이 사건 제보자의 학생운동 행적 및 함께 활동을 하였던 사람들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사건 제보자가 제대한 후인 2014. 10.경 피고소인 최 을 포함한 국정원 직원 3명이 이 사건 제보자를 찾아와 학생운동을 함께 했던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연락을 유지하는지, 근황은 어떠한지 등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 제보자는 이들에게 부담스럽다고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들은 2~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1~2주 간격으로 이 사건 제보자를 찾아와 '학생운동을 함께 했던 사람들의 동향을 알려주면 보상을 하겠다'며 돈을 건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 제보자는 당시 진행하고 있던 사업에 집중해야 하고 국정원과 알고 지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거절하였으나, 국정원 직원들은 매번 만날 때마다 30만원에서 50만원 가량의 금전을 지급하였고, 술을 강권하며 사업에 협조하라는 식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계속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본인의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빚이 쌓이고, 결혼하여 아이까지 출산하게 된 이 사건 제보자는 2015. 4.경 국정원의 제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피고소인들의 이 사건 제보자를 통한 민간인 사찰

이 사건 제보자는 2015. 4.경부터 이른바 국정원의 '프락치'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정원은 민간인에 대한 사찰 활동을 '사업'으로 지칭하였고, 이 사건 제보자는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김 대표'라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니다.

이 때부터 피고소인들은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졸업하여 이미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민간인들을 사찰하라는 지시를 구체적이고 집요하게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 제보자가 서울대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하였을 당시 알고 지냈던 선배들을 사찰 대상으로 삼도록 하고, 고려대 민주동문회 주요 인사 연락망을 제공하며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사찰 대상들의 대화에 등장하면 그 얘기를 잘 기억했다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2015. 4.경부터 2019. 8.경 사이에 이 사건 제보자는 피고소인들의 지시로 이 사건 제보자와 같은 학교를 졸업한 고소인들이 소속된 ‘통일경제포럼’이라는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고소인들과 함께 연구 활동이나 답사 활동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건 제보자는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사찰 대상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그 동향을 피고소인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사찰 대상이었던 민간인들과 만나는 모든 자리에 피고소인들이 지급한 녹음기를 소지하고 가서 녹음을 하거나, 지급 받은 장비로 동영상 촬영을 하여 피고소인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민간인 사찰활동에 대한 대가로 피고소인들은 이 사건 제보자에게 매달 기본급 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매달 이 사건 제보자와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고, 이 사건 제보자가 1-2주일에 1번 국정원 경기지부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마다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제보자가 피고소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단체의 요직을 맡게 될 경우 성과급 명목으로 별도의 금원을 지급

하였습니다(증 제2호증 금융거래내역).

다. 이 사건 제보자의 공익제보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제보자는 약 5년간 피고소인들의 지시로 인하여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하는 동안 항상 양심의 가책을 느껴왔습니다. 피고소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종속될 수밖에 없었고, 지인들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안면 신경 마비 증세가 나타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며,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피고소인들에게 종속되는 바람에 자신이 종전에 하고 있던 사업은 제대로 영위할 수 없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여도 피고소인들은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받아가라’는 질책만 하였을 뿐입니다. 결국 이 사건 제보자는 사찰대상자 중 한 명이었던 선배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듣고, 신용대출까지 받아 자신을 도와주자, 죄책감을 느끼고 더 이상 불법적인 사찰을 지속할 수 없다고 결심하고 2019. 8. 23.경 위 선배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양심선언을 하였습니다(증 제3호증 문자메세지 내역).

또한 2019. 8. 26. 머니투데이 기사를 통하여 지난 5년간 지속되었던 피고소인들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내역을 폭로하고(증 제4호증의 1 내지 5), 피고소인들의 직권남용 행위 등에 대하여 공익제보(이하 ‘이 사건 공익제보’라 합니다.)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 소결

고소인들은 이 사건 제보자가 공익제보한 내용을 메시지와 기사로 접하고, 이 사건 제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피고소인들에 의하여 고소인들의 권리 행사가 방해되었음을 알게 되어,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의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해진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피고소인들의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의 점

가. 피고소인들의 직권의 남용

1) 관련 법리

우리 대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의 '직권의 남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남용'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3. 14. 2018도18646 판결 참조).

2) 피고소인들의 직무의 범위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의하면 국정원의 직무는 ‘국의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顛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에 한정됩니다.

국정원은 이 사건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이번 사안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직에 대한 내사 사건”이라며, “국보법 위반 수사는 국정원의 법상 직무이고, 내사 주체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정원 대공수사부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증 제5호증 2019. 8. 26.자 연합뉴스¹⁾ 기사 참조).

따라서 국정원 스스로도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공익제보의 내용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 점,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국가정보원법상 국정원의 직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3) 피고소인들의 불법적인 권한 행사 - 직권의 남용

국정원은 이 사건 공익 제보에 대하여 ‘대공 수사’라는 직무 수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의 직무 행위의 목적 및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한 것으로, ‘직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1)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6173200504?input=1195m>

가) 피고소인들의 직무 행위의 목적

국정원의 해명과 달리, 피고소인들은 사찰의 대상이 된 대상자들이나 단체에 대하여 특별히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확보하고, 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수사를 개시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대통령령 제29211호) 제7조에 의하면, “정보수사기관이 정보사범 등의 내사·수사에 착수하거나 이를 검거한 때와 관할 검찰기관에 송치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제1항). 만약 국정원의 해명과 같이 내사의 일환이었다면, 이에 대한 국정원장에 대한 통보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관련 통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수사가 필요합니다.]

피고소인들은 종전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기획하여, RO라는 허위의 조직을 만들어내었던 수사팀인 국정원 경기지부 공안2팀 소속 직원들로, 피고소인들은 이 사건 제보자에게 “경기 동부 RO 중에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일부고, 아직 잔당이 남아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일망타진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이 사건 프락치 활동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로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확정된 ‘RO’에 대하여 그 세력이 남아 활동한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불법적인 정보수집을 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피고소인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어떠한 수사의 단서도 없이, 탐색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진행하여, 민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같은 행위는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소위 'RO사건'과 같이 일종의 간첩조작을 염두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불법적 수사라 할 것입니다.

나) 불법적인 사찰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직무행위의 필요성·상당성

피고소인들은 이 사건 제보자에게 “주체사상을 모르면 그들로부터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며, 북한에서 만든 원서를 학습 교재로 주체사상을 교육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제보자는 인터뷰를 통하여 정작 자신이 감시한 사람들 입에서 주체사상이나, 그와 관련한 단어가 나온 적은 없었고, 주로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가 소멸할 위기에 있으니 지역사회 운동을 열심히 하자는 내용이 많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증 제4호증의3 각 기사 참조).

피고소인들은 이 사건 제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보고 받고, 이 사건 제보자가 통일경제포럼 등의 행사나 강연에 참여하여 녹취한 내용을 모두 파악한바, 사찰 대상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과는 전혀 무관한 활동을 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소인들은 오히려 이 사건 제보자에게 지역 청년회 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하며, 이 사건 제보자에게 청년회 사무실 보증금까지 지원하면서 지역사회 소멸 문제를 연구하는 청년회를 고향인 당진에서 만들 것을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제보자로부터 제공 받아 파악한 정보에 따르더라도, 통일경제포럼이나 지역 청년회가 하는 활동은 '국가보안법'위반의 소지는 전혀 없는 활동들로, 이 사건 제보자를 통하여 대상자들을 사찰하는 행위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다) 피고소인들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 행위

(1) 허위 진술서 작성 지시

이 사건 제보자가 1주에서 2주에 한번 간격으로, 국정원 경기지부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마다, 사실대로 진술서를 작성하면 피고소인들은 이 사건 제보자에게 “그렇게 쓰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 다시 써야 한다”며 진술 내용을 코치했고, 이 사건 제보자는 피고소인들이 지시하는 대로 진술서 내용을 작성하여야 했습니다.

특히 국정원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 연기하듯이 미리 대본을 짜보고 그대로 진술서를 쓰고, 쓰다가 중간에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나타나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2) 불법적인 사찰 도구 지급

피고소인들은 이 사건 제보자에게 소위 'RO 사건'의 프락치였던 이성윤이 사용하여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킬 때 썼던 제품이라며, 녹음기와 이를

숨길 수 있는 가방을 제작하여 건넸습니다. 또한 녹음을 위해 hi Q라는 녹음 프로그램이 설치된 갤럭시 탭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증 제4호증의3 참조).



증 제3호증의3 기사 중 사진 발췌 - 녹음기와 가방 사진

뿐만아니라 피고소인들은 통일경제포럼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이 사건 제보자에게, 진주에서 생활하면서 통일경제 포럼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서울을 다녀가던 고소인2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서울 신대방 쪽에 집을 마련하여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들은 고소인2를 사찰하기 위하여, “방 안에 있는 화재감지기에 모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고소인2가 의심하지 않으면, 실제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이후 피고소인들이 방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 방에 카메라를 설치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이 사건 제보자가 피고소인들에게 카메라 설치여부

에 대해 묻자, “우리가 설치했어도 김대표한테 설치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김대표가 부자연스러울테니”라고 말하였고, 이후 만날 때마다 방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보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고소인2의 사생활에 대해 언급하여, 실제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감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통합진보당 사건 관계자들에게 접근해 ‘국가 피해자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척하며 영상을 찍어오라는 주문을 하며, 영상 장비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고소인2는 2019. 9. 1. 제19기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위촉 시 약력은 통일경제포럼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고소인1 또한 통일경제포럼 소속 회원으로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상적인 사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평화, 통일정책을 함께 하고 있는 단체와 그 대표자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사찰하는 행위는 ‘직무’라는 이름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고소인들은 이 사건 제보자를 통해 그동안의 사찰 과정을 알게 된 후, 집에도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통화와 대화가 모두 도청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상적인 두려움을 느끼면서 가족, 친구들과의 일상적인 대화조차 편하게 나누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불법적인 자금 지급 등 회유

피고소인들은 이 사건 제보자가 지속적으로 불법 사찰 행위를 하도록 회유하기 위하여 수차례 불법 성매매 업소, 불법 안마시술소를 데리고 다니고, 이 사건 제보자가 죄책감에 성매매를 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면 이를 강압적으로 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피고소인들의 특수

활동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의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돈으로 위법을 저질러가며 이 사건 제보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이 사건 제보자를 지속적으로 회유·압박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은 이 사건 제보자에게 “나중에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법정에서 사찰 대상의 위법행위를 증언하면 RO 사건 제보자에게 준 10억 여원과 유사한 금액을 주겠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피고소인들은 이 사건 제보자를 이용하여 일종의 RO사건과 유사한 조작 사건을 기획하여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사람의 권리 행사 방해

이처럼 피고소인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제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며, 이 사건 제보자를 통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고소인들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및 인격권 등 중대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받았습니다.

이 사건 제보자는 본인과 고소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의 공식적인 강연이나 답사뿐 아니라, 사적으로 고소인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나눈 모든 이야기들을 녹취하여 피고소인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처럼 고소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감시, 도청, 비밀녹음, 비밀촬영 등으로 인하여 고소인들은 사생활의 비밀이 완전히 노출되었고,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인격권 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할 것입니다.

다. 소결

이처럼 피고소인들은 외형적으로는 대공 수사에 대한 직무를 집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실질을 살펴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전혀 없는 민간인들을 이용하여 조작 사건을 기획할 목적으로 정당한 직무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고소인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피고소인들에게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5. 피고소인들의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의 점

피고소인들은 범죄 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피고소인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내사 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직무와 관련한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사찰 행위를 하였습니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찰 대상자들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날조하여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15. 4. 사업을 수락한 직후 위 피고소인들은 위 이 사건 제보자에게, ‘고려대 출신 혁명가’ 라는 가공의 인물이 이 사건 제보자에게 접근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지하혁명조직’의 조직원이 되도록 ‘총화’한 것처럼 증거를 만들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당시 서산에 있는 캠핑장에 위 이 사건 제보자의 친구 최 이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최 이 소개시켜 준 이름모를 ‘고려대 출신 혁명가’가 와서 총화를 하고, 이에 이 사건 제보자가 조직원이 되는 것으로 사건을 만들기로 기획한 뒤, 캠핑장에 소화기 모양의 감시카메라 2대를 설치하고 제보자에게 위 최 을 방과제로 유인하여, 대화를 녹음하

게 하였습니다.

이후 위 이 사건 제보자는 국정원 경기지부에서 ‘최 이 소개시켜 준 고려대 출신의 지하혁명조직원이 총화를 하고, 제보자는 그 조직원이 되었으며, 위 지하혁명조직원은 총화를 하고 중국으로 밀항하려 하였다’ 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 진술서 상 이 사건 제보자가 친구인 과 이 동하는 장면은 친구가 제보자에게 조직원을 소개시켜 주기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서울대 고려대 지하혁명조직” 이라는 이름의 조직은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암약하고 있다” 고 기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소인들은 기자인 위 최 공군관련 취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던 이 사건 제보자와 우연히 만나게 된 상황에서도 대화녹음을 지시하여, 위 최 이 작성한 기사를 데스크에 송고하는 행위 또한 “기자로 활동하면서 군사정보를 빼내어 조직 윗선에 보고” 하는 것으로 진술서에 기재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경제포럼의 단둥기행에서 일정 마지막 날 단둥역에서 일행 중 3명이 함께 역 안으로 들어갔다가 1명이 역 밖에 서서 담배를 피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두고, “한명이 망을 보고 두 명이 북한공작원과 접선한 것” 이라고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가 하면, 블라디보스톡 답사에서는 일정에 차질을 빚어 국제버스 탑승 시간표를 재차 확인한 사실을 ‘북한 공작원을 만나기 위해 정보기관을 따돌리려는 목적으로 여행 일정을 자주 바꾼 것’ 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즉, 위 이 사건 제보자가 누군가와 만나서 나누는 대화, 통일경제포럼 활동 등은 모두 ‘지하혁명조직’의 활동의 일환이 되도록 허위의 사실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증거를 조작하였던 것입니다.

위와 같이 피고소인들은 이 사건 사찰 피해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보자를 통하여 녹취를 하거나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토록 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어 무고하려는 의도로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관한 증거 날조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들은 위 이 사건 제보자가 허위의 진술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없는 일인데 이렇게 써도 되느냐’고 묻자, “불법이지만 니가 진술을 이렇게 하면 합법이 돼.”라고 말하는 등 국가보안법 상의 죄에 대하여 증거를 날조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에게는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6. 기타 혐의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의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세차례에 걸쳐 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진술조서 및 진술서를 증거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허가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위 이 사건 제보자에게 진술서 작성을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고 불법적인 성매매를 강요하고 해당 비용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아래와 같이 범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

수사기관인 국정원 소속 직원으로 피고소인들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공문서’에 해당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해당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와 같은 경위로 세차례에 걸쳐 진술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위와 같이 ‘조작’된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한 행위는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으로서 피고소인들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술서 혹은 진술조서를 근거로 하여 법원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등을 발부받았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 사건 제보자는 3차례에 걸쳐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100차례 이상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해당 진술조서 및 진술서를 토대로 법원의 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 등 손실) 위반

피고소인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이 사건 제보자를 포섭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로 유흥비를 지출하고 불법적인 성매매를 자행하였으며, 허위의 진술서 작성을 대가로 현금을 지출하는 등 국가 소속 공무원으로써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실 및 그 고의가 인정됩니다. 특히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대부분 특정 신용카드로만 결제하였는데, 이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로 추정되고 있고 그렇다면 위 사실은 심각한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등손실) 죄에 해당하고,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라는 명목으로 심각한 국고의 손실을 초래한 이 부분에 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다. 성매매특별법 위반

피고소인 최 및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은 위 이 사건 제보자를 포섭·회유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유흥업소, 불법안마시술소 등에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를 하였습니다(증 제6호증의2 머니투데이 기사 “[단독] 국정원, 프락치 포섭·회유하며 수차례 성매매 정황” 참조). 이 사건 제보자의 진술에 따르면, 제보자가 죄책감에 성매매를 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면 의리를 강조하며 성매매를 권하거나 성매매를 하는데 사용할 돈을 차라리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또한 위 기사에서 ‘최씨’ 라고 지칭된 국정원 직원 최 은 파트너를 정해준 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를 집요하게 묻는 등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 최 및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은 국정 수행에 사용하여야 하는 경비를 이용하여, ① 공무원인 국정원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를 위반하고, ② 본인 또한 직접 성매매를 하여 동조 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법 제21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

7. 피고소인1 내지 피고소인7의 범죄혐의: 공동정범의 성립

가. 관련 법리

대법원은 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가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나. 위 범죄사실 제4, 5항 및 6. 가, 나에 있어서의 공동정범 성립

이 사건 피고소인들 중 피고소인1 내지 3은 이 사건 제보자가 위 피고소인8 내지 15로부터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중용받던 시절의 국정원장이었고, 피고소인4는 현재 국정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피고소인5 내지 7은 국정원에서 수행하는 수사 및 사업 등의 기획, 부서별 조정, 예산 등을 담당하는 국정원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 사건 피고소인8 내지 피고소인15 등에게 위 범죄사실 제4, 5항 및

제6.항의 가목 및 나목의 상당한 혐의가 있고, 피고소인1 내지 피고소인4는 당시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던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등에 대한 사실을 보고 받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또한 피고소인5 내지 피고소인7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위와 같은 민간인 불법 사찰을 통한 정보 수집에 사용된 불법 도·감청 장비 및 불법 수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였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그렇다면 공동정범에 관한 위 법리와 피고소인1 내지 7의 조직에서의 지위 및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들이 비록 프락치를 이용한 민간인 불법 사찰, 허위 진술서 작성 등 직접 전체 모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정원의 보고·결재 라인을 통하여 이들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1 내지 7은 피고소인8 내지 15와 공모관계가 성립하므로 위 범죄사실 제4, 5항 및 제6항의 가목, 나목의 공동정범에 해당됩니다.

8. 결론

국정원은 2017년 국내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고 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대공 수사라는 외형을 빙자하여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여전히 자행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이 중심이 된 사찰·공작·날조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청산을 위하여 철저한 수사 및 엄벌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 제보자의 일관된 진술,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성명 및

조사결과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바대로, 이 사건과 같이 회유와 협박에 기반한 소위 '프락치'를 활용한 수사방식은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증 제7호증 2019. 8. 27.자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서 참조). 민간인을 금품과 향응으로 매수하여 경제적 종속관계를 형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민간인을 사찰하는 방식은 직무의 수행 방식에 있어 현저한 불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고, 불법적인 성매매를 강요하는가 하면, 허위 진술서 작성의 대가와 성매매비용으로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그 위법의 정도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방식을 통해 국가보안법 사건을 무고·날조한 행위는 국가기관이길 포기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고소인들은 더이상 국가정보원과 같은 수사기관이 헌법질서와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 국가보안법, 형법,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특별법 위반의 점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프락치'(정보원)을 통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만큼, 1) 피고소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예외 없는 대면조사, 2) 국정원과 각 관계자들의 자택, 국정원 관련 금융거래내역 일체(법인카드계좌, 직원들 사용 계좌)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헌법질서 유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요청드립니다.

증거자료

1. 증 제1호증 고유번호증
1. 증 제2호증 금융거래내역
1. 증 제3호증 문자메세지 사진
1. 증 제4호증의1 2019. 8. 26.자 머니투데이 기사
 “[단독]국정원, 문 대통령 뜻 거역한 민간인 사찰 이어왔다”
1. 증 제4호증의2 2019. 8. 26.자 머니투데이 기사
 “[단독]프락치에 한달 400만원씩.. 국정원 ‘RO’처럼 10억원 주겠다”
1. 증 제4호증의3 2019. 8. 26.자 머니투데이 기사
 “[단독] 국정원 ‘프락치 활동’ 녹음장비 주고, 주체사상도 직접교육”
1. 증 제4호증의4 2019. 8. 26.자 머니투데이 기사
 “[단독] 국정원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때도 버텨’민간인 사찰 자신감”
1. 증 제4호증의5 2019. 8. 26.자 머니투데이 기사
 “[단독] 프락치 그만두겠다 하니.. 국정원, ‘우리는 만만한 조직 아냐’”
1. 증 제5호증 2019. 8. 26.자 연합뉴스 기사
 “국정원, ‘민간인사찰’ 주장에 "제보로 국보법 위반 내사”
1. 증 제6호증의1 2019. 8. 27.자 머니투데이 기사
 “[단독] 국정원 프락치 ‘김대표’ ‘나는 절대 자발적 제보자가 아니다’”
1. 증 제6호증의2 2019. 8. 28.자 머니투데이 기사
 “[단독] 국정원, 프락치 포섭 회유하며 수차례 성매매 정황”
1. 증 제6호증의3 2019. 9. 2.자 머니투데이 기사
 “[단독] 국정원 프락치 김대표 ‘나 말고 다른 프락치 더 있다’”
1. 증 제6호증의4 2019. 8. 27.자 머니투데이 기사
 “[단독] 정세균 의장 · 이인영 대표도 국정원 사찰대상이었다”

1. 증 제7호증

2019. 8. 27.자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서

1. 증 제8호증

진상조사보고서

2019. 10. 7.

고소인들의 대리인

범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 낙 봉

범무법인 율림

담당변호사 하 주 희

오 민 애

범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조 지 훈

범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양 승 봉

변호사 김 인 숙

변호사 박 치 현

변호사 박 삼 성

변호사 서 채 완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귀중